## ■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1] <개정 2019. 12. 31.>

## 교통소음 · 진동의 관리기준(제25조 관련)

## 1. 도로

	구 분	한 도		
대 상 지 역		주 간	야 간	
		(06:00~	(22:00~	
		22:00)	06:00)	
가. 주거지역, 녹지지역, 보전관리지역,				
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·주거개발진	소 음	68	58	
흥지구 및 관광·휴양개발진흥지구,	(LeqdB(A))	00		
자연환경보전지역, 학교・병원・공공				
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			60	
인의료복지시설 · 영유아보육시설의	진동	65		
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	(dB(V))	0 0		
역				
나.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농림지역, 관리지	소 음	73	63	
역 중 산업・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	(LeqdB(A))	7.5	03	
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	진 동	7.0	6.5	
지역, 미고시지역	(dB(V))	70	65	

비고

- 1. 대상 지역의 구분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- 2.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 · 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.

## 2. 철 도

		한 도	
대 상 지 역	구 분	주 간	야 간
네 경 시 뒤	工工	(06:00~	(22:00~
		22:00)	06:00)
가. 주거지역, 녹지지역, 보전관리지역, 관리지	소 음		
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		70	60
· 휴양개발진흥지구, 자연환경보전지역, 학	(LeqdB(A)		
교・병원・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			
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·영유아보육시설의	진 동	65	60
	(dB(V))	00	
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			
나.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농림지역, 관리지역 중	소 음	75	65
산업 • 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	(LeqdB(A))	10	
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, 미고시지역	진 동		
	(dB(V))	70	65

비고

- 1. 대상 지역의 구분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- 2.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 · 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.
- 3. 정거장은 적용하지 않는다.